

	<b>학생회간부선임규정</b>	규정번호	5-1-2
		제정일자	1985.06.03.
		개정일자	2021.11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회장 및 부회장) 학생회장,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

제2조(집행부) ① 각 집행부서별 부·차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조(대표) 각 학과별 과대표 및 반대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며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대의원회) 각 학과별 과대표 1인은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승인기준) 학생회 간부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자로서 행실이 바르고 지휘, 통솔능력이 있는 자
2. 전 학기 성적이 B 학점(3.0점)이상인자
3.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4. 교내 종교 활동에 적극 참석한자

제6조(임기)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당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85 년 6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